

## 구글(Google)의 뉴스저작물 정책에 대한 고찰\*

김 현 경\*\*

### <국문초록>

질 높은 우수한 뉴스콘텐츠의 생성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다. 그러나 우수한 뉴스콘텐츠를 제작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뉴스의 가치가 경시되고 뉴스콘텐츠 제작에 기울인 노력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뉴스콘텐츠 제작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감소는 뉴스콘텐츠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정보의 왜곡 또는 불균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 빠지게 된다.

온라인에서 뉴스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인 구글은 언론사의 뉴스를 활용해 제목과 기사 일부를 노출시켜 직접링크 방식으로 뉴스콘텐츠를 제공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뉴스저작물 이용방식은 ‘공정이용’에 해당되며, 저작권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구글의 검색서비스 시장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은 뉴스저작권자가 이러한 구글의 정책에 대하여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저작권사용료 협상에 임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제로 구글의 이러한 뉴스저작물 정책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고안된 저작권제도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보았다.

뉴스저작물 이용방식인 직접 링크는 현행법상 '전송'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DOI: 10.18215/kwlr.2016.49..869

투고일자: 2016.10.03, 심사일자: 2016.10.23, 게재확정일자: 2016.10.23.

\*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조교수, 법학박사

의미에서 대법원의 ‘링크’에 대한 판단은 재고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직접링크에 대하여 공중송신권이라 배타적 개념에 포함시킬 경우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개념 논리적으로 볼 때 ‘링크’가 공중송신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서 권리침해 여부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공중송신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구글의 뉴스저작물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과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저작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뉴스가 가지는 공익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영향성에 비추어 볼 때 뉴스저작물에 대하여는 뉴스창작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보상체계와 국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의 새로운 유형으로 뉴스저작물의 이용을 규정하여 권리자의 허락 없이 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보상은 사적이용에 준하지 않고 영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구글, 뉴스저작권, 공정이용, 직접링크, 저작재산권 제한

## — 목 차 —

- I. 문제제기
- II. 뉴스저작물의 개념과 법적 성격
- III. 구글의 뉴스저작물 이용을 둘러싼 분쟁의 핵심
- IV. 뉴스저작물 이용의 기본원칙과 입법과제
- V. 결론

## I. 문제의 제기

뉴스의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오프라인 뉴스의 소비가 급속히 줄어들게 되었고 신문사·방송사 등 뉴스저작권자는 더 이상 뉴스의 수익구조를 오프라인 판매와 광고에서 구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인터넷 초기 뉴스저작권자는 온라인 뉴스매개서비스사업자가 뉴스콘텐츠를 무료로 복제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관대하였다.<sup>1)</sup> 그러나 이러한 뉴스저작물에 대한 소비와 복제가 신문사 등 뉴스제작자의 수익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과거처럼 무상의 복제를 묵인하기 어려워졌다. 최근 온라인 뉴스저작물과 관련된 문제는 결국 뉴스저작권자의 수익구조 악화, 뉴스저작물에 대한 합리적 경제적 대가에 대한 갈등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구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을 통한 뉴스저작물의 구매는 유료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코리아 등 4대 포털로부터 언론사가 받는 금액은 디지털뉴스콘텐츠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sup>2)</sup> 그러나 구글은 언론사의 뉴스를 활용해 제목과 기사 일부를 노출시켜 직접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는 자신들의 뉴스

---

1) 1990년대 중반부터 디지털 환경으로 뉴스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언론사들이 ‘공짜 뉴스’ 경영전략을 기획한 것을 실책으로 지적하는 연구가 있다. ‘공짜 뉴스’로 잡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여행,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벌여 수익 모델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결과적으로 ‘뉴스는 공짜’라는 인식만 강화시키게 되었다고 한다. 심상민·이전행·오수정·지성우·최민재, “디지털 뉴스 유통과 저작권 조사분석”(2006-02), 한국언론재단, 2006.

2) 포털의 뉴스 제공 비용과 언론사들의 인터넷 광고 규모는 관련 업계에서 매우 민감한 데이터로 평가하고 있는 사항이다. 국내 디지털 뉴스 콘텐츠 시장은 크게 포털의 뉴스 구매 시장, 증권사HTS(Home Trading System) 뉴스 판매 시장, 뉴스 저작권 신탁단체와 일반 판매대행사에서 일반기업 및 기관에 뉴스 콘텐츠를 판매 시장, 그리고 개별 언론사가 일부 기업에 뉴스를 제공하거나 경제지를 중심으로 유료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뉴스 판매 시장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특히 포털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최민재·문철수, “디지털 뉴스 콘텐츠 시장과 저작권”,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서 2012-01, 2012, 27~29면.

저작물 이용방식은 ‘공정이용’에 해당되며, 저작권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뉴스저작권자인 언론사들은 구글의 뉴스서비스에 대하여 ‘콘텐츠를 아무런 대가 없이 도용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로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저작권 관련 법령개정, 소송 등으로 드러나고 있다.<sup>3)</sup> 이에 대응하는 구글의 일관된 정책은 ‘저작권 사용료 합의’가 아닌, ‘종이 매체의 디지털 진화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등 일명 협력적 관계설정이다.<sup>4)</sup> 이러한 합의를 통한 해결방식은 저작권 제도에 근간을 두고 이루어지기 보다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대한 일시적 봉합이라고 할 수 있다. 구글은 “뉴스기사 서비스와 관련하여 저작권사용료 적용 시, 해당 국가의 신문 전체를 뉴스 검색에서 제외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 왔고 실제로 뉴스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한 스페인에 대해 직접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일부 관례는 저작권사용료 지급을 인정한 바 있고,<sup>5)</sup> 실제로 구글의 이러한 뉴스저작물 정책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고안된 저작권제도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뉴스저작물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고찰 한 후 구글과 언론사 간 갈등에 있어서 법적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하여 분석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쟁점이 현행 저작권 제도의 취지와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

3) 독일, 스페인 등이 저작권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구글의 저작권료 지급을 시도하였고, AFP, 벨기에 언론협회인 Copiepresse 등이 2006년 구글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4) 구글은 프랑스 종이 매체들의 디지털 사업 전환 이니셔티브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6,000만 유로(8,200만 달러) 규모의 이른바 ‘디지털 출판 혁신 펀드(Digital Publishing Innovation Fund)’를 조성하였다.

5) 벨기에 언론협회인 Copiepresse가 2006년 Google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해당 소송에 대해 2007년 벨기에 법원은 언론사의 사전 허락 없이 Google News를 통해 기사를 노출시킬 수 없다며 Google에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Business Insider, ‘3 Charts Show How Google May Have Fixed Its Mobile Ad Problem’, 2013.1.22

색해 본다.

## II. 뉴스저작물의 개념과 법적 성격

### 1. 뉴스저작물의 개념

뉴스(news)는 “새로운 소식”이다. 즉,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소식이 사전적 의미에서의 뉴스인 것이다. 여기에서 “소식”(消息, 알림)은 사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사정을 알리는 말이나 글”을 뜻한다.<sup>6)</sup> 현행 법률에는 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뉴스의 사전적 의미 및 뉴스와 관련된 법률에 규정된 ‘신문’이나 ‘뉴스통신’의 정의로부터 그 개념을 유추해 보면, 뉴스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이라고 할 수 있다.<sup>7)</sup>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사실이나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뉴스의 내용이 단순한 사실이나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저작권법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sup>8)</sup> 포함함으로써(저작권법 제7조 제5호) 저작권법의 보호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sup>9)</sup>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

6)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8115700> (국립국어원 제공 자료)

7)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뉴스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의 규정은 없지만, 제2조 제1호의 ‘뉴스통신’의 개념을 정의하는 중에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이 규정되어 있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신문’의 정의 중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8) 대표적으로 단순한 사망기사 또는 부고기사, 단순한 인사이동만을 기재한 기사, 단순한 서훈의 사실만을 기재한 기사, 일기예보 등이다.

물'을 인정한 취지는 엄격히 저작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 공익적 목적에 의해 널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문화발전이라는 궁극적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기사는 원래 저작물이 아니므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될 여지도 없으나 이를 규정한 저작권법 제7조제5호는 이와 같이 원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없는 것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10)</sup>

그러나 그 밖의 보도기사의 경우에는 그 기사가 6하원칙에 입각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의 배열 및 문장 표현 등에 있어서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날 만한 것이 없는지 여하에 따라 그러한 개성이 드러날 여지가 없는 것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어문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때 저작권보호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한 한계적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아주 짧고 간결한 문구로 사건·사고 등을 알리는 기사 외에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sup>11)</sup>

9) 베른협약 제2조제8항에서는 “이 협약의 보호는 일상의 뉴스 또는 시사적 기사의 성격을 가진 잡보적 사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The protection of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news of the day or to miscellaneous facts having the character of mere items of press information)”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이는 베른협약의 태도도 동일하다. 이에 관한 상세한 것은, WIPO, 「Guide to the Berne Convention...」(WIPO, 1978), p. 23 참조.

11) 東京地裁 平成16年 3月24日 判決 平14 (7) 28035号 ('요미우리 온라인' 사건): YOL 표제(헤드라인)는 그 성질상 간결한 표현에 의해, 보도의 대상이 되는 뉴스기사의 내용을 독자에게 전하기 위해서 표기되는 것으로서 표현의 선택의 폭이 넓다고는 할 수 없는 점, YOL 표제는 25자라고 하는 자수의 제한 내에서 작성되어 많아도 20자 미만의 자수로 구성되어 있어 이 점으로부터도 선택의 폭은 넓다고 할 수 없는 점, YOL 표제는 YOL 기사 속의 말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이것을 단축한 표현이나 그것에 극히 짧은 수식어를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본다면, YOL 표제는 YOL 기사로 기재된 사실을 가려내어 기술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사실의 전달에 지나지 않는 잡보 및 시사 보도」(저작권법 10조 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 2. 법적 성격

### 1) 강한 사회적 기속성

저작물 자체는 무체물로서 특히 강한 사회적 기속성을 특성으로 한다. 유체물의 생성은 통상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무체물인 저작물은 대부분 이미 존재하는 다른 저작물에 기초하여 창작활동이 이루어진다. 즉 대부분의 저작물은 일반적인 유체물과 달리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에서 형성된다. 어떤 경우에는 천재에 의하여 기존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위대한 저작물이 나오기도 하지만, 통상은 소박한 일반인에 의하여 기존의 저작에 약간의 창작을 보태는 정도가 대부분이다.<sup>12)</sup> 소설과 영화로 제작된 ‘다 빈치 코드’는 성경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으며, ‘반지의 제왕’은 북유럽 신화에서 내용과 소재의 상당 부분을 가져 왔다. 뿐만 아니라 17세기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조차도 중세후기, 르네상스 시대에 유행하였던 신화와 전설의 내용을 차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sup>13)</sup> 이런 의미에서 모든 저작물은 전무(全無)의 백지상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선행적 경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여타 재산권의 객체보다도 강한 사회적 기속성을 가지게 된다.

특히 뉴스저작물의 사회기속성은 여타 문예적 저작물에 비해 더 강력할 수밖에 없다. 뉴스저작물은 뉴스의 속성상 그 가치가 새로운 것을 창작한 데에서 배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 해야 하므로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저작권 제도에 있어서 그 보호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미 발생한 사건과 역사적 사실 등을 기반으로 하므로 사회적 맥락성이 특히 강하게 드러나게 되며 순수 창작적 요소는 미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뉴스저작물은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참여권의 기초가 되는 점에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는 뉴스의 독점적 사용만을 주장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뉴스에 포함된 정보란 특정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공공의

12) 정필운, "헌법 제22조 제2항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20권 1호, 2010, 212면.

13) Laurie Sterns, "Copy Wrong : Plagiarism, Process, Property and the Law", California L. Rev. 80, 1992 참조.

이익을 위해 사회적으로 자유롭게 유통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2) 사실적·기능적 성격

뉴스의 경우 정확한 사실 보도를 위해 뉴스 작성에 관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성되며, 그 표현 방식의 다양성은 다른 어문 저작물에 비해 그 폭이 크지 않다. 어문저작물 가운데 사실(과학적, 역사적, 전기적, 시사적인 사실 등)을 소재로 하여 서술된 저작물의 창작성은 저작자의 당해 사실에 관한 감상·평가·식견 등이 포함된 표현이 이루어진 경우가 중요한 평가요소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 예컨대, 시사보도 기사에서 단지 객관적인 사실을 내용으로 개개의 문장을 분리하는 정도에 그치고 간결한 표현에 의한 문장인 경우에는 창작성 자체가 부인될 것이다.<sup>14)</sup>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제도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단순한 시사보도에 불과한 뉴스와, 저작물에 해당하는 뉴스를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그 경계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또한 뉴스 기사는 다른 어문 저작물과 달리 시의성이라는 기능이 해당 기사의 경제적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사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거의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최근의 정보통신 환경에서는 기사도용이나 표절이 일어나면 원저작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시의성으로 인한 뉴스의 경제적 가치가 침해받을 수 있다.<sup>15)</sup> 저작물로 인정되어 보호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와 기사 작성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의 노력이 투입되므로 그에 대한 보상체제와 저작권 보호체제가 반드시 비례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

## 3) 강한 공개성·활용성

뉴스의 목적 자체가 정보의 전달이며, 뉴스의 여론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중시되기 때문에 뉴스 콘텐츠는 보다 많은 사람이 이를 보고, 또한 나

14) 이호홍 외, "뉴스저작물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27면.

15) 이호홍 외, 위의 보고서(주14), 61면.

늘수록 여론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그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sup>16)</sup> 뉴스의 경우에는 생산 혹은 취재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기능을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sup>17)</sup> 국민 모두가 뉴스에 접근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뉴스는 다른 내용의 콘텐츠보다 언론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뉴스콘텐츠의 자유로운 유통은 언론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여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만 보면, 뉴스콘텐츠는 비록 그것이 불법으로 복제되어 유통되더라도 바람직할 수도 있다. 언론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추창하는 신문사로서는 뉴스콘텐츠의 자유로운 유통을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다.<sup>18)</sup>

뉴스의 고유한 가치는 대중 속으로의 전파이며 이는 뉴스의 신선함이 유지되는 동안에 그 의미가 있다. 즉 뉴스를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한다면 뉴스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뉴스 산업의 목적도 매일 아침 수백만 독자들에게 적정한 가격에 전 세계의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적절한 가격이란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에 이러한 행동을 유인하기 위해 필요한 이윤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sup>19)</sup>

### III. 구글의 뉴스저작물 이용을 둘러싼 분쟁의 핵심

#### 1. 현행법상 합법인가

16) 오수정, “디지털 뉴스 유통과 저작권”, 한국언론재단, 2006, 143면.

17) 한지영, “뉴스에 대한 권리 귀속에 관한 소고”, 창작과 권리 통권48호, 2007, 158면.

18) 한국신문협회, “뉴스콘텐츠 저작권 보호방안”, 2008, 10면.

19) Jason R. Boyarski, “The heist of Feist: protection for collections of information and the possible federalization of ‘hot news,’” *Cardozo Law Review*, vol.21, December, 1999, p.871.

### 1) 이용방식(“직접링크”)의 적법성

링크의 유형에는 ①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다른 웹사이트의 프론트 페이지로 전환되도록 하는 방식의 단순링크와 ② 다른 웹사이트에 올려진 저작물의 웹주소를 특정하여 링크함으로써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구체적인 저작물에 접근하여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직접링크(direct link; 딥링크(deep link) 라고도 한다), ③ 사업자가 제공하는 링크를 이용자가 클릭할 경우 링크된 타인의 웹사이트 정보들이 특정 프레임 속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마치 링크제공자의 웹사이트의 정보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의 이른바 프레임 링크(frame lin) ④링크된 정보를 호출하기 위해 이용자가 클릭을 할 필요도 없이 링크제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링크된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거나(이미지 등의 경우) 바로 재생되게 하는(동영상이나 음악파일 등의 경우) 방식으로 링크해 두는 방식의 이른바 인라인 링크(inline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라고도 한다) 등이 있다.

구글은 각종 언론사들의 기사 제목이 포함된 링크와 함께 처음 두 세 문장 정도의 기사 내용 일부를 미리 보여 주고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의 웹사이트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직접링크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sup>20)</sup> 다음 등 국내 포털과 다르게 ‘구글 뉴스’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클릭하면 개별 언론사 사이트로 유입되도록 링크를 제공한다.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재산권은 복제, 공연, 공중송신, 배포, 전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권리의 다발로 되어있다. 이러한 이용형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권리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누구나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하다. 따라서 구글의 뉴스저작물 이용방식인 직접 링크가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의 직접침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직접링크가 그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2차적 저작물작성 등의 방

20) 네이버의 뉴스서비스는 아웃링크(뉴스스탠드)와 인링크(네이버 뉴스, 검색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법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직접링크가 저작권법상의 복제 또는 전송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본 판결은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의2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sup>21)</sup>

유럽사법재판소는<sup>22)</sup> ‘어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이외의 누군가가 자

21)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15.3.12. 선고2012도13748판결에서는 인터넷상 링크를 거는 행위가 저작권법상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에 직접 저촉될만한 복제행위나 전송행위가 아니라는 종전 선례들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였고, 더 나아가 침해물로 링크를 걸었다는 것만으로는 복제 혹은 전송에 대한 방조행위로 취급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였다.

22) CJEU Case C-466/12. 이 사건은 스웨덴에서 Svensson을 비롯한 4명의 저널리스트들(원고들)이 자신들이 신문에 기고한 글(그 글은 신문사의 웹사이트에도 게재되어 누구나 제약 없이 열람할 수 있게 제공되고 있었다)을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링크를 거는 방식으로 공중에게 송신하여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스톡홀름지방법원(1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출발하였다. 1심 법원은 피고의 링크제공 행위는 공중송신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인 스웨덴의 스베아 고등법원(Svea Court of Appeal)은 심리를 중단하고, 2012. 9. 18. 유럽사법재판소(CJEU, Court of Justice of EU)에 유럽 저작권지침(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의 공중송신권 관련 규정의 해석에 대한 예비적 결정(preliminary ruling)을 요청하면서 링크의 공중송신권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신의 웹사이트에 그 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면 그것이 EU 저작권 지침 3조 1항에서 말하는 공중송신에 해당하는가<sup>23)</sup>와 관련하여 링크의 제공은 링크제공 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링크된 저작물에 바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이상 실제로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하여 이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중송신행위(전송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저작권 지침상의 공중송신의 개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의 최초 송신 이후에 다시 동일한 기술적 수단으로 송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공중'에 대한 송신이어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새로운 공중'이라 함은 저작권자들이 최초의 공중송신을 할 때 염두에 두지 않은 공중을 의미한다. 우리 대법원이 자신이 관리 하는 서버에 저작물의 복제물을 저장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송에 해당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서버 기준'을 채택한 것과 달리, 링크제공행위를 전송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링크제공행위를 전송으로 볼 경우 링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인터넷이라는 표현매체의 사용에 과도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새로운 공중' 기준이라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3)</sup>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든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든 구글의 직접링크는 저작권법상 복사 또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우리 대법원에 의할 경우 직접링크 행위 자체가 공중송신 중 전송에 해당되지 않으나,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직접링크 행위 자체는 공중송신에 해당된다. 다만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의사에 기하여 인터넷상에 개방된 웹사이트에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게 제공되고 있는 경우, (그 제공이 중단되거나 제공 범위가 축소되는 등의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설사 불법복제물에 링크를 건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공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중송신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게 될 가능성이 많다. 즉 구글의 직접링크 대상인 뉴스저작물이 이미 누구나 무

---

하였다.

23) 이해완, “인터넷링크와 저작권 침해책임”, 성균관법학 제27권제3호, 2015.09, 246면.

료로 접근할 수 있게 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역시 ”새로운 공중“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중송신권 침해가 되지 않게 된다.

일본의 경우 요미우리 신문사가 신문 기사의 제목을 링크로 나열하여 ‘한 줄 뉴스’로 제공하고 광고수입을 얻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고등법원은 2005년 10월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행위는 요미우리 신문사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였다.<sup>24)</sup> 즉 이러한 일본의 판례에 의하면 링크는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특정 웹문서를 링크하였다고 해서 복제나 전송 등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는 아니나 일정한 경우에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 2) ‘공정이용’ 해당성

직접링크가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기사제목과 2~3줄의 뉴스기사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복제 또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되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5년 AFP(Agence France-Presse)는 구글이 허락 없이 자사의 뉴스 헤드라인, 요약, 사진 등 4500여개의 뉴스를 무단 사용하여 링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복제권 침해이며, 사용 중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계속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25)</sup> 구글은 AFP 뉴스의 헤드라인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만큼 독창적이지 않고 단순한 사실만 명시하고 있어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AFP는 “헤드라인과 2~3줄의 리딩기사는 그 기사내용 중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며 창작에 가장 큰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에 해당된다. 특히 독자의 주의를 끌고 그 기사의 나머지 부분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가장 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sup>26)</sup>며 반박하였다. 또한 구글

24) 知財高裁判決2005(平成17年).10. 6. 宣告平成 17(ネ) 第10049號.

25) case no. 1:05-cv-00546-GK,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26) <http://www.law360.com/articles/3191/afp-suit-vs-google-tests-fair-use-doctrine> 2016.8.2. 확인.

은 구글의 링크로 통신사가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항변했지만, AFP는 일반 언론사와는 달리 광고수익으로 이익을 내는 언론사가 아니라며 반박하였다. 결국 이 사안은 2007년 5월 양측의 합의로 종결되었으며 구글의 뉴스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본안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2007년 2월 13일 브루셀 법원은 신문사들의 저작권위탁관리업체인 Copiepresse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글이 이용허락계약을 맺지 않고 링크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sup>27)</sup> 재판부는 구글이 신문사의 뉴스콘텐츠의 복사본을 캐시(Cache)에 저장하였다가 하이퍼링크(Hyperlinks)를 통하여 이러한 복사본에 접근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sup>28)</sup> 구글은 ‘Robots.txt’ 파일을 통하여 검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있다고 강조하였지만, 재판부는 저작권법 허락은 옵트인(Opt-in) 방식이기 때문에 ‘Robots.txt’와 같은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면책의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소위 하이퍼링크(Hyperlink) 그 자체가 콘텐츠 복제에 해당하는지 또는 직접링크(Deep Link)가 허용되는지 등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포츠신문 온라인서비스를 담당하는 4개사가 자사 신문의 콘텐츠를 무단 게재했다며 커뮤니티 서비스인 세이클럽의 운영업체 네오위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기사의 제목 또는 3줄 가량의 일부 내용을 게재한 것은 링크 서비스에 불과하며”며 직접 링크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를 부정했다.<sup>29)</sup> 기사제목과 2~3줄의 핵심 내용 인용에 대하여 별도로 복제여부 등을 판단하기 보다는 ‘링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일본신문협회는 저작권에 대해 기사와 사진을 무단으로 홈페이지 전제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점, 랜과 인트라넷상의 이용에는 저작권자의

27) Thomans Crampton, ‘Google Said to Violate Copyright Laws’, New York Times, 2007. 2. 14.

28) Patrick Van Eecke, Maarten Truyens, “Recent Events in EU Internet Law”, Journal of Internet Law, May, 2007.

29) 서울중앙지법 2006.7.21. 선고 2004가합76058.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 무단 요약 소개는 저작권 침해라는 점, 신문·통신사가 송신한 정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송신처에 연락할 것 등을 밝히고 있다.<sup>30)</sup> 또한 일본의 저작권법에 따라 뉴스의 요약 소개라도 무단으로 행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기사 표제의 경우 기사의 제목임과 동시에 기사 내용의 요지, 요약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상의 규정이 애매모호하다고 보고 있다. 표제의 일부를 다른 정보의 요지와 신문명, 게재 연월일만 기재하면 기사가 있었음을 알리는 초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표제는 신문사의 창의와 노력이 깃들인 것으로 저작물이라는 해석도 있다.<sup>31)</sup>

### 3) ‘부정경쟁’ 또는 ‘불법행위’ 여부

1918년 미 대법원은 International News Service(INS) v. Associated Press 사건<sup>32)</sup>에서 뉴스를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판사하였다. 다수의견에 의하면, 뉴스 자체는 그날의 역사(The history of the day) 보고서에 불과하므로 역사를 가장 먼저 보고하는 사람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 제정권자의 의도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뉴스 자체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다수의견은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검토하면서 준 재산권(Quasi Property Right)을 인정하여 AP와 같은 뉴스서비스 회사가 뉴스를 판매할 시간(Lead Time Protection)을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뉴스 수집 및 보도를 기업적 시각에서 인식하고, 뉴스 수집에 혜택을 줄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그 논거를 보면, 상업적 거

30) 채성혜, “일본의 뉴스 저작권 : 뉴스 요약소개도 무단으로 하면 저작권 침해”, 신문과 방송 통권480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29면.

31) 채성혜, 위의 글(주30), 30면.

32) 248 U.S. 215(1918). 세계 제1차대전 중 미 동부에서 발간된 AP의 뉴스기사를 INS(International News Service)가 부당하게 이용하여 미 서부지역 가입자에게 전송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INS는 자체 기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AP 기사 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한 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발간하였다. 쟁점은 AP가 발간하는 뉴스 속보(Bulletin) 또는 AP 회원사인 신문사가 발간하는 신문에 있는 뉴스를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래의 각 상대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자본 및 창의성을 정직하게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경쟁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부정이용이 발생하고, 주의 불공정거래(unfair competition)의 원칙이 적용되게 된다고 한다. 결국 INS는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추수한 것과 마찬가지로기 때문에 부정이용(misappropriation)과 불공정거래(unfair competition)의 책임을 져야 하며 뉴스 서비스회사는 경쟁자가 자기 뉴스 속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하지 못하도록 제한된 범위의 재산권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재산권은 한시적으로만 인정된다. 결국 ‘따끈한 뉴스(Hot News)’에 한하여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자는 것이다.<sup>33)</sup> 이처럼 따끈한 뉴스의 원칙 구성요건으로는 첫째, 일반인이 아닌 직접 경쟁자가 불공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둘째, 부정 이용한 내용이 시간에 민감하여야 한다. 셋째, 피고는 뉴스 수집에 들어간 비용이 거의 없는 반면 원고는 적정한 작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였어야 한다. 넷째, 피고의 활동이 원고에게 상업적 피해를 주었어야 한다.

이후 National Basketball Assoc. v. Motorola, Inc. 사건에서<sup>34)</sup> 항소심인 제2항소법원은 따끈한 뉴스의 원칙을 수용하되 그 요건을 더 엄격하게 설정하였다. 즉 첫째, 원고가 정보를 생산하거나 수집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야 하며, 둘째, 정보의 가치는 시간에 크게 민감(Highly Time-sensitive)하여야 하며, 셋째, 피고의 정보사용이 원고가 들인 노력에 무임승차(Free-riding)하는 것이 되며, 넷째, 피고의 정보사용이 원고가 만든 생산물 또는 서비스에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고, 다섯째, 원고 노력에 대한 다른 사람의 무임승차가 생산물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려는 동기를 약화시켜 생산물 등의 수나 양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Substantially Threatened)이

33) 이에 대하여 Brandeis 대법관은 새로운 개념의 재산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의회가 할일이지만, 법원이 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34) 105 F.3d 841(2nd cir. 1997). 미국농구연맹(NBA)은 농구경기 점수 및 통계자료를 미리 계약을 맺은 특정 매체에만 제공하고 있었는데, Motorola가 경기 점수 및 통계자료를 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를 판매하자 자기의 독점권을 침해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라는 것이다.<sup>35)</sup>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제2조 제1호 차목)”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언론사가 뉴스를 얻기 위하여 시간, 노력, 기술 등을 투자하였으므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 요건은 충족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구글이 뉴스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였으므로 ‘무단이용’ 요건도 충족되어 진다. 그러나 이러한 무단이용으로 인하여 언론사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또한 구글의 직접링크 방식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뉴스콘텐츠 제작자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제작한 기사를 법적 보호밖에 있다고 보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으며, 이러한 기사는 법적 보호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 보아서 이를 무단으로 이용한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즉 뉴스의 무단이용을 불법행위책임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sup>36)</sup> 일본에서는 이러한 뉴스의 무단이용에 대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원고 요미우리(讀賣)신문사와 피고 디지털 얼라이언스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디지털 얼라이언스는 Yahoo!Japan 내의 뉴스기사 웹페이지에 링크하여 자신의 웹사이트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 쟁점은 원고가 제작한 뉴스기사의 표제를 피고가 한 줄 뉴스 형식으로 무단 이용한 것이 저작권 위반인지 여부였다. 일본의 항소심법원은 뉴스기사의 표제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sup>37)</sup>

35) Id. at 845.

36) 박범석, “신문사와 포털의 이용허락 계약”,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22호, 2007, 61-84면.

그러나 설사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용한다 할지라도 일반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학설, 판례에 의할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침해배제와 예방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정되어 왔으므로 ‘부정경쟁행위’만큼 실익이 크지 않다.

## 2. 새로운 입법(스니펫세, snippet tax)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스니펫(snippet)은 사전적으로 적은 양의 정보 혹은 정보의 일부를 의미한다. 구글뉴스는 각종 언론사들의 기사 제목이 포함된 링크와 함께 처음 두 세 문장 정도의 기사 내용 일부(일명 ‘스니펫’)를 미리 보여 주고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의 웹사이트에 직접 연결 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여기서 ‘스니펫세’의 핵심은 두 세 문장의 기사 내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구글세(Google Tax)가 다국적 IT기업의 독과점 및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과 이들이 사용하는 콘텐츠에 대해 부과하는 사용료를 통틀어 일컫는 말로 스니펫세는 구글세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2013년 8월 ‘인접저작권법(Ancillary Copyright Law)’이 발효되어 검색엔진이 자신의 사이트에 언론사의 뉴스, 기사 등을 일부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료를 보상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신문기사 등의 콘텐츠는 발행 후 1년 동안은 별도 로열티 계약이 없는 한 페이지 공유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초기 제안된 강력한 저작권 보호 규정에서 크게 후퇴하면서 최소한의 발췌와 뉴스 링크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면제된다. 또한 1년 이내라도 원문 사이트 링크를 포함하며 간단한 문구나 매우 적은 분량의 발췌문만 노출시킬 경우에는 로열티 지급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문구’ 혹은 ‘매우 적은 분량의 발췌문’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돼 있지 않다.<sup>37)</sup> 스페

37) 知財高裁判決2005(平成17年).10. 6. 宣告平成 17(ホ) 第10049號.

38) 구글은 이 콘텐츠사용 유상화 조치에 강한 반대를 표명하고 “당신의 인터넷을 보호하라. 당신이 찾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라”는 표어를 내걸고, 독일 국회의사당(Bundestag)의 결정에 반대하는 메일을 보내는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정

인도 독일의 영향을 받아 2014년 10월 28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스니펫세’를 도입하였다.<sup>39)</sup> 개정법에 따라 구글이 저작권료 지불 없이 신문과 잡지의 콘텐츠를 발췌하거나 링크할 경우 최고 60만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이법에 따르면, 스페인 신문사들은 구글뉴스나 야후뉴스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의 제목이나 기사 원문과 연결된 링크, 발췌된 기사가 게시될 때 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sup>40)</sup> 이에 대하여 구글은 자신들의 뉴스서비스는 영리적 광고와 연계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료를 부과하면 구글 뉴스의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4년 12월 16일부터 스페인에서 구글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sup>41)</sup> 그러나 최근 EU집행위원회가 EU차원에서 스니펫세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개별 국가 단위의 논의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42)</sup>

이러한 스니펫세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뉴스저작권자와 구글의 서로 다른 인식이 상존하고 있다. 뉴스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독자 상당수는 전문 기사로 찾아가기보다는 뉴스검색창의 발췌문 몇 줄만 읽고 말기 때문에 사실상 구글뉴스등에 온라인 독자를 오히려 빼앗기는 형국이므로 콘텐츠 생

---

부의 법안에는 액수와 주체 등 실질적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다 (EKN 뉴스 유로저널, 2014. 2. 7자). 이후 악셀스프링거(Axel Springer)란 언론사가 ‘구글 뉴스’에 자사 기사 사용을 중단시켰지만, 악셀스프링거 홈페이지 트래픽이 급감하자 결정을 번복하고 다시 뉴스를 제공한 바 있다.

39) 스페인 개정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

40)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05/2014110500338.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05/2014110500338.html) (2016.8.9. 확인)

41) 결국 구글이 스페인에서 ‘구글뉴스’ 서비스를 중지시킨 후 스페인 언론사들의 평균 웹 트래픽이 대폭 감소했다. 웹 분석 전문 조사업체 차트비트(Chartbeat)에 따르면 구글이 뉴스 서비스를 폐쇄시킨 후 50개의 언론사를 추려 트래픽을 조사한 결과, 평균 50%씩 웹트래픽 수치가 떨어졌다. 조쉬 슈위츠 차트비트 애널리스트는 “큰 규모의 언론부터 군소 언론까지 골고루 선정해 웹트래픽을 계산해 보니 구글뉴스가 있었던 때와는 확연하게 다른 트래픽 양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전자신문, 2014년 12월 17일자).

42) <https://next.ft.com/content/634c7e72-9e7f-11e5-b45d-4812f209f861> 2016.8.3. 확인

산자의 권익을 보호를 위해 신문기사의 제목과 발췌문을 노출시키는 검색 엔진은 그에 대해 마땅히 저작권사용료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구글은 독자의 기사 읽기가 제목과 발췌문 수준에서 멈춘다면 애초에 그 기사는 독자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것이며, 검색엔진의 뉴스 링크를 통해 언론사 사이트가 더 많은 이용자와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IV. 뉴스저작물 이용의 기본원칙과 입법과제

##### 1. 뉴스저작물 이용의 기본원칙

###### 1) 저작권 제도의 기본원칙 준수 : 창작 인센티브로서 경제적 대가의 보장

창작의 동기는 단지 자신의 창작을 보여주기 위함에서부터 그러한 창작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창작동기의 다양성을 모두 반영한 제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을 통한 제도의 반영은 매우 제한적이다. 자신의 창작이 구태여 경제적 급부를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러한 이들에게 법에 의한 독점적 권리의 보장은 창작유인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으며 할 필요도 없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기존의 창작물을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독점권을 보장하는 법이라는 제도적 도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경제적 대가 없는 활용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 저작권을 헌법상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취지도 결국 경제적 대가의 보장과 일맥상통한 취지이다. 저작권이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된다는 것이 미국·독일·일본의 지배적 견해이며, 한국 헌법학계에서도 전통적·통설적 견해이다.<sup>43)</sup> 헌법 제22조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

43) 이규홍·정필운, “헌법 제22조 제2항 관련 개헌론에 관한 소고- 지적재산권조항의

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는 이 조문 상 '권리'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에 해당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sup>44)</sup> 헌법 제23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그 보장구조에 있어서 자유권적 성질의 기본권과 다른 보장 구조를 취하고 있다.<sup>45)</sup> 즉 헌법은 일반적인 자유권적 성질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그것의 보호영역 및 그에 대한 제한 등의 구조로 그 보장체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에 대하여는 헌법 제23조제1항제2문에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그 제한으로서의 공용수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을 입법자의 역할을 통하여 형성되게 하는 보장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헌법이념을 구체화한 법률이므로 헌법의 이념적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헌법 제22조의 지적재산권 조항을 통하여 형성된 저작권은 다시 제23조의 재산권행사 제한 규정을 통해 제한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정당화가 요구된다. 기본권제한의 형식적 정당화는 기본권의 제한이 '법률'의 형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요구되며, 기본권제한의 실질적 정당화를 위하여 필요한 헌법적 원칙으로는 비례원칙과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을 들 수 있다. 즉 비례원칙은 기본권제한과 관련하여 기본권제한의 실질적 정당화

---

재정립에 관하여 -” 法曹 Vol.650, 2010.11, 79면.

44) 우리 헌법재판소는 저작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재산권이라고 언급한 바는 없으나 “헌법 제22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실용신안제도는 새로운 고안을 창안하여 이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게 실용신안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을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실용신안권은 고안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여 권리자의 재산적 이익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적재산권 중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 1993. 11. 25. 92헌마87결정, 헌재 2000. 3. 30. 99헌마143 결정, 헌재 2002. 4. 25. 2001헌마200 결정.

45) 표명환, “헌법상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헌법재판소의 보장 내용 범리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46집, 2012, 26-27면.

를 위한 헌법적 원칙으로 이해된다. 헌법(제37조제2항)은 명시적으로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비례원칙에 합치하게), 그리고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제한을 위한 형식적 정당화와 실질적 정당화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sup>46)</sup> 즉 저작권제한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비례원칙에 의한 정당화가 필요하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헌법상의 기본원칙과 이념이 반영된 것이며, 창작 인센티브 보장을 위한 독점배타적 재산권 보장을 문화발전의 핵심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창작인센티브로서 경제적 보상에 해당되는 저작권의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제한만 가능하다. 따라서 뉴스저작물의 권리자에게는 그러한 저작물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로서 독점배타적 재산권이 인정되며, 그 이용에 대하여는 권리주체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마땅히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 2) ‘뉴스’의 속성에 기한 기본원칙 준수 : 전파성 보장으로 민주주의 기여

뉴스저작물은 그 성격에서 알 수 있듯이 본질적으로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읽혀져야 그 진정한 가치가 발휘된다. 시사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유통이 언론의 자유와 민주국가의 존립에 도움이 된다. 거꾸로 뉴스콘텐츠의 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것이다. 뉴스의 목적 자체가 정보의 전달이며, 뉴스의 여론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중시되기 때문에 뉴스는 보다 많은 사람이 이를 보고, 또한 나눌수록 여론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sup>47)</sup> 나아가 뉴스에 대한 독점적 권리의 부여는 정보의 사회적 공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반한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뉴스가 일종의 공공재로서 사유재산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정보는 가능하면 자유롭게 전파되고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 모두가 되도록 무료로

46) 이준일, “비례성원칙의 개념과 구조 및 구체화”, 고시연구, 2005, 30면.

47) 오수정, “디지털 뉴스 유통과 저작권”, 한국언론재단, 2006, 143면.

뉴스에 접근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sup>48)</sup> 즉 권리자의 의사에 기한 뉴스저작물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널리 모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한편 뉴스의 생성은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뉴스의 생성을 위해 취재, 자료수집, 문서작성 등의 시간적·재산적 투자가 이루어지며 특히 뉴스가 저작물에 해당될 경우 창작자의 인적·물적 노고가 추가된다. 따라서 완성된 뉴스저작물을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할 경우 뉴스저작물의 생성이 줄어들어 유통되는 뉴스의 양이 감소하게 된다. 뉴스를 단순히 정보라고만 보고 저작권의 보호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뉴스 창작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뉴스의 창작 의욕을 저하시키게 된다. 무상의 뉴스 전파 및 이용은 단기적으로는 정보의 유통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뉴스의 창작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질과 양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언론의 자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뉴스콘텐츠 제작자의 제작의욕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자유로운 의견 또는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sup>49)</sup> 즉 뉴스저작물이 공정하게 생성,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 2. 입법과제

### 1) 현행법상 구글의 뉴스저작물 이용의 한계

우선 구글뉴스의 직접링크 자체가 저작권 침해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법원은 직접링크는 공중송신권 특히 전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직접링크는 법률상 개념해석론에 비추어 볼 때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공중송신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다. 공중송신의 일

48) 한지영, “뉴스에 대한 권리 귀속에 관한 소고”, 창작과 권리 통권48호, 2007, 158면.

49) 문재완, “뉴스콘텐츠 저작권 보호 방안”, 한국신문협회, 2008, 29면.

유형인 '전송'은 반드시 복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 대한' 이용제공(또는 그에 수반하는 송신)으로서 '수신의 이시성(異時性)'을 가지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웹페이지에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링크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중의 구성원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수신의 이시성) 링크 정보를 클릭함으로써(인라인 링크 이외의 경우), 혹은 해당 웹페이지에 접속함으로써(인라인 링크의 경우) 바로 그 저작물을 송신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링크제공행위를 '전송'이라고 볼 수 있다.<sup>50)</sup> 링크가 공중송신에 해당된다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견해 역시 이러한 개념론적 해석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은 제102조제1항 제4호에서 '정보검색 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링크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은 명확하다.<sup>51)</sup> 본 조항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링크 제공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링크행위'가 '전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sup>52)</sup>

다만 직접링크를 공중송신권이라는 배타적 개념에 포함시킬 경우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링크대상 저작물의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원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의 입장도 논리적인 면에서 절대적

50) 이해완, “인터넷링크와 저작권 침해책임”, 성균관법학 제27권제3호, 2015, 234면.

51) 이해완, 『저작권법(제3판)』, 박영사, 2015, 1073면.

52) 박준석, “인터넷 링크행위자는 이제 정범은 물론 방조범조차 아닌 것인가?-대법원 2012도13748 판결의 문제점과 저작권 형사범죄 처벌의 논리-”, 산업재산권 제48호, 이 논문은 대법원의 결정이 i)음란물링크를 다루었던 팬티신문 판결에서 링크행위자에게 이미 정범성을 긍정하였던 입장과 충돌한다는 점, ii) 저작권법 제102조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링크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방조책임을 부담시킬 것을 전제로 책임제한요건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것과 전혀 맞지 아니한다는 점, iii)정책적으로도 인터넷 자유를 고양시키기보다 부당하게 저작권침해만을 조장할 개연성이 있고, 여러 외국에서도 링크행위에 대하여 적어도 방조책임 추궁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본인도 이러한 취지를 지지한다.

타당성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러한 인터넷상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적 배려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개념 논리적으로 볼 때 ‘링크’가 공중송신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서 권리침해 여부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공중송신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구글뉴스에 드러나는 헤드라인과 2~3줄의 리딩기사가 뉴스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판례에 의하면 ‘제호’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뉴스저작물 표제의 경우 기사의 제목임과 동시에 기사 내용의 요지, 요약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소설, 만화 등 어문저작물의 ‘제호’와 동일시 볼 수 있는가가 의문이다.<sup>53)</sup> 예를 들어 전체 기사 913자 중 핵심 요약이 포함된 80여 자의 내용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러한 이용은 마땅히 복제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다.<sup>54)</sup> 공정이용에 의해 면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량의 부분만을 이용한 경우라도 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sup>55)</sup> 구글뉴스에 드러나는 헤드라인과 2~3줄의 리딩기사는 그 기사

53) 제호 등이 독자적으로 보호되는가에 대한 소위 “외적 보호”에 대하여는 다소의 논란이 있으며, 국가별로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예컨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은 소설의 제호 등에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스위스 등은 보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는 독창성이 있는 제호를 저작물로서 보호하는 한편, 보호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혼동의 우려가 있는 같은 종류의 다른 저작물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호홍 외, “뉴스저작물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34면.

54) 저자가 구글뉴스를 직접 확인한 결과 2016년 4월 18일자 연합뉴스 내용인 “충남도 '선진국형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시동”이라는 표제의 기사내용은 총 900여자에 해당되며 그 중 핵심요약인 표제를 포함 80여자가 노출되어 있었다.

55) Harper & Row Publisher, Inc v. Nation Enterprises, 471 U.S. 539, 1985. 사건에서 2,250단어가 들어간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에서 300여개의 단어가 사용된 경우 법원은 그 300개의 단어가 그대로 인용되었고, 인용구들이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들은 질적으로 원고의 독특한 표현을 나타내었고 침해한 기사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내용 중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며 창작에 가장 큰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에 해당된다. 특히 독자의 주의를 끌고 그 기사의 나머지 부분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가장 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정이용에 의해 면책되는 경우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

또한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볼 때 역시 공정이용에 해당되기 곤란하다. 뉴스저작물의 주된 수익가는 방송뉴스의 경우 여타 방송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광고수입이며, 신문뉴스의 경우 오프라인 배급으로 인한 수익과 광고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 구글 뉴스 서비스를 통해 구글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가와 이러한 경제적 이익이 뉴스저작권자의 잠재적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가 공정이용 해당성 여부의 판단의 핵심이다. 구글은 구글 뉴스(news.google.com)에는 광고를 붙이지 않고, 원래의 사이트로 이동시키며, 저작권자의 트래픽을 높여주므로 잠재적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 우선 뉴스저작물의 수익과 직접 연계된 부분인 광고시장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광고시장 규모는 그 성장세가 큰 변화가 없이 정체되어 있다.<sup>56)</sup> 그러나 신문의 광고는 연평균 1.9%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07년~14년), 인터넷검색은 연평균 13.8%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17,092억 원이었던 신문 광고비가 2012년에는 16,543억 원, 2013년에는 15,477억 원으로 하락하였다. 반면에 인터넷 매체의 광고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 광고의 경우는 2011년에 12,440억 원이었다가 2013년에는 13,21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sup>57)</sup> 구글 뉴스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운영되며, 해당 사이트가 구글과 제휴를 할 경우에는 해당 뉴스 사이트에 구글이 제공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글은 검색과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을 제공하

56) 우리나라의 광고시장은 2013년의 9조 6,587억, 2014년 9조 7,576억으로 약 1.0% 성장하였으나, GDP내 광고비 비중은 감소(2013년 0.67% → 2014년 0.66%)하고 있다. 오세성, “2014년 광고시장 결산 및 2015년 전망”, 코바코 이슈리포트 2015 vol.1, 32~46면.

57) 오세성, 위의 보고서(주56), 32~46면.

는 광고 사업자로 날마다 수없이 많은 정제된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는 검색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검색의 결과가 될 수 있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sup>58)</sup> 구글에게 있어서 뉴스 서비스는 뉴스 그 자체가 아니라 일단 검색의 주 대상이며, 광고와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뉴스 사업자들이 구글의 도구를 사용해 준다면, 그들은 검색의 대상이 되고, 구글의 광고가 게재될 공간이 되는 것이다. 특히 구글은 유럽 검색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등 구글의 트래픽 유발력으로 인한 시장지배력은 이미 잠재적 시장가치의 판단에 있어서 출발선 자체를 불공정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글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네티즌이 많다보니 저작권 사용료 부과요청에 대한 구글 뉴스 폐쇄결정은 가히 위협적이다. 구글세 법안을 추진했던 스페인신문발행인협회가 도리어 정부에 번복을 요청하는 사건은 이미 뉴스저작권자가 구글 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상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sup>59)</sup> 구글의 뉴스저작물 이용이 뉴스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의 공정성 측면에서, 저작권자의 수익구조 측면에서 저작권자에게 이미 지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 저작재산권 제한의 일 유형으로서 뉴스저작물의 이용 보장

### (1) 저작재산권 제한 인정 근거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에 기반 한 보상체계를 인정하는 것과 별도로, 뉴스가 가지는 공익적 가치와 민주주의 영향성에 의한 경우 뉴스저작물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sup>58)</sup> 조영신, “2015 해외 미디어 동향 -05 페이스북, 구글, 애플의 뉴스 서비스 전략 - ‘인스턴트 아티클’에서 ‘애플 뉴스’까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5, 33면.

<sup>59)</sup> 2014년 10월 저작권료성격의 구글세를 징수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스페인에서 구글은 현지시각 2014년 12월 16일 오후 8시30분을 기점으로 뉴스서비스를 중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언론사의 트래픽이 평균 50% 감소하자 구글세 법안을 추진했던 스페인신문발행인협회(AEDE)가 발벗고 나서 정부에 제검토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배포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별 없는 배포에 있어서 구글뉴스 등 뉴스매개자 혹은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역할은 탁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저작물에 대하여 마땅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당연한 저작권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져서는 안 된다. 뉴스저작물에 대하여는 뉴스창작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보상체계와 국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뉴스저작물의 활용은 뉴스가 본질적으로 가지는 공익성·활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누구나 허락 없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창작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활용만 보장할 경우 창작인센티브는 좌절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작권의 침해에 이르지 않으면서 뉴스저작물의 유통 및 전파를 확보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저작권제한의 새로운 유형으로서 뉴스저작물의 이용을 보장하되, 권리자의 보상청구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제안될 수 있다.

저작권제한의 제한을 인정하는 근거로 공공재의 특성 및 공익적 관점, 경제이론적 관점,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이다.<sup>60)</sup> 저작물의 ‘비배타성’이나 ‘비경합성’은 공공재(Public Goods)의 대표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물의 이러한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저작물 사용에 대한 협상이 시장에서 불가능하므로 일정한 경우 저작권의 제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시장을 통해서는 달성되지 않으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래를 허용하기 위해 저작권제한이 필요하다는 이론이다.<sup>61)</sup> 뉴스저작물 역시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한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는데 다른 공공재와는 달리 국가가 대신 생산하여 제공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과 유사한 재산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이 되기에 부적합한 재화를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법률 등의 제도적 도구를 이용하여 ‘상품화’하기 때문에 국가가 ‘정보재’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에 중요한

60) Lepage, Anne.2003.“Overview of Exception and Limitations : To Copyright in the Digital Environment,” e- Copyright Bulletin(Jan-Mar.2003), pp.4-5.

61) 村井麻衣子, “フェア・ユースにおける市場の失敗理論とその修正—著作権制度規定の現代的意義—”, 『デジタル・コンテンツ法のパラダイム』,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編 (雄松堂出版)(2008). 5, 173頁.

제한을 가하고 그 내용에 일정한 변화를 강제하지 않을 수 없다.<sup>62)</sup>

한편 공리주의적 경제이론에 의할 때 작가의 창작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므로,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작가는 이익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 이상의 가격으로 작품을 판매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경쟁자가 동일한 작품시장에서 작가보다 가격경쟁력이 앞서게 될 경우 작가는 창작의 인센티브를 얻지 못하게 되고 학문과 예술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작가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게 되나 이로 인해 독점가격이 형성될 경우 작가는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가격을 올릴 수 있고 이 경우 작품의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높아진 가격으로 인해 작품의 접근비용 및 이용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경쟁상태보다 작품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또한 후작가의 창작비용을 증가시켜 창작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이처럼 작가에게 완전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sup>63)</sup> 따라서 공리주의적 경제이론에 의할 경우 뉴스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배타권을 부여하여 창작의지를 고양시켜 주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서 새로운 뉴스저작물의 생성과 배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 제한을 인정해야 한다.

## (2) 저작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의 인정 근거

저작재산권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기본권)에 해당되므로 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보상의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도 헌법상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sup>64)</sup>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정당화가 요구된다. 기본권제한의 형식적 정당화는 기본권의 제한이 ‘법률’의 형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요구되며, 기본권제한의 실질적 정당화를 위하여 필요한 헌법적 원칙으로는 비례원칙과 본질내용침해 금지원칙을 들 수 있다. 즉 비례원칙은 기본권제한과 관련하여 기본권제한

62) 강남훈 외, “정보재 가치논쟁”,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7, 92-93면.

63) Julie E. Cohen, “Copyright and the Perfect Curve,” *Vanderbilt L. Rev.* vol. 53(2000), pp. 180-184.

64) 김현경,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논집 vol.26 no.2 통권 제102호, 2013년 여름호, 107-135면.

의 실질적 정당화를 위한 헌법적 원칙으로 이해된다. 헌법(제37조제2항)은 명시적으로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비례원칙에 합치하게), 그리고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제한을 위한 형식적 정당화와 실질적 정당화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sup>65)</sup>

현재 저작권재산권을 제한하는 개별조항에서 보상을 인정하는 경우로는 교과용도서보상금제도, 수업목적보상금제도, 도서관보상금제도 등 세 가지가 있다. 그밖의 저작권재산권 제한의 경우에는 보상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법의 영역에서 ‘재산권보장의 기본적 내용’은 ‘창작에서 발생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성과를 사법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귀속시키는 것과 이러한 창작물을 창작자가 자기 책임 하에 처분할 수 있는 자유’로 표현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저작물의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사용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는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기본적 내용’을 저작권법에서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제한의 합헌성은 그것이 헌법상 공공이익에 의해 정당화되는지 여부와 관련 되게 된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저작권재산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의 위헌심사에 있어서 ‘배타권의 배제’와 ‘보상청구권의 배제’를 구별하고 있다.<sup>66)</sup> 배타권의 배제 근거에 대하여는 배타권의 배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적인 수업에 있어서 청소년을 지적 창작과 친숙하게 한다’라는 공공의 이익(교과서사건<sup>67)</sup>)과 ‘동시대 음악의 지적창작

65) 이준일, “비례성원칙의 개념과 구조 및 구체화”, 고시연구, 2005.2, 30면.

66) 이하 소개되는 독일 판례의 내용은 民商法雜誌(제140卷 制6號, 2009.9.15) 著作権法における権利論の意義と射程(一)-ドイツにおける憲法判例と學說の展開を手がかりとして-, 653-676頁.

67) BVerfGE 31,229 : Kirchen-und Schulgebrauch.(1971년 7월 7일 제1법정 판결) : 저작권법 제46조(당시)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것이다. 동조는 「저작물의 일부, 언어 저작물 또는 음악 저작물의 일부 범위, 개개 조형예술의 저작물 또는 개개 사진의 저작물이 발행 후에 다수의 저작자의 저작물을 집성하여 그 성질상, 전적으로 교회, 학교, 수업을 위하여 제공되는 작품집에 수록되는 경우에는 복제 및 배포가 허용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소원인들은 동조에 의한 복제권, 배포권 제한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본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물을 함께 공유한다'고 하는 정당한 공공의 이익(교회음악사건<sup>68</sup>)을 그러한 사례로 판시하고 있다. 이들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보상청구권 배제'에 대하여는 이러한 '공공에 이익'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높아진 공공의 이익'을 요구하였다. '높아진 공공의 이익'의 예로 '수감자의 고립, 자주적 생활기술의 망각, 지적빈곤의 위기'를 들고 있다(형무소사건<sup>69</sup>).<sup>70</sup>

즉 권리자의 허락 없이 뉴스저작물의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보상청구권을 배제시킬 만큼 '높아진 공공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현행법상 '교과용도서', '수업목적사용', '도서관에서의 이용' 등에서도 보상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뉴스 제목 및 2-3줄의 리딩기사의 복제, 직접링크를 통한 뉴스저작물의 이용이 이보다 더 '높아진 공공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뉴스저작권자는 뉴스의 창작에 합당한 보상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러한 보상을 바탕으로 뉴스저작물의 확대 재생산을 촉진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저작권제도의 취지이다. 뉴스저작물의 강한 사회기속성, 공개성, 활용성 등에 친한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널리 이용될 수 있는 제도적

68) BVerfGE 49, 382 ; Kirchenmusik.(1987년 10월25일 제1법정 판결) 본 결정은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당시)에 의한 공중 재생권리의 제한을 위헌으로 제기한 헌법 소원사안이다. 동 규정은 일정한 종교행사에 있어서의 저작물의 공중 재생을 무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 제2호 후반, 즉 무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전단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69) BVerfGE 79,29 : Vollzugsanstalten(1988년 10월 11일 제1법정 결정)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 제3문(당시)은 「(동항 2문의)보상의무는, ..... 수감자 위로행사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그 사회적 또는 교육적 목적에 비추어 명확하게 한정된 범위의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한 면제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처음으로 실제로 「높아진 공공의 이익」에 의한 제한의 정당화를 인정하여 보상청구권 배제를 인정하였다.

70) 그러나 형무소사건결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형무소를 운영하는 국가나 주의 재정을 배려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은 '높아진 공공의 이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 '높아진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는 사안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형무소 사건결정이 '높아진 공공의 이익' 기준을 정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방안의 모색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뉴스저작물이 언제나 무료로 이용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재산권의 제한의 일 규정으로 뉴스저작물의 이용을 규정하되, 그와 관련된 보상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보상은 사적이용에 준하지 않고 영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 V. 결론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토대로 발전하는 것이며, 언론의 자유는 올바른 정보가 존재할 때 가능한 것이다. 성실하고 질 높은 우수한 뉴스콘텐츠의 생성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참여 민주주의의 기본이 된다. 그러나 우수한 뉴스콘텐츠의 제작에는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뉴스콘텐츠 제작에 기울인 노력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뉴스콘텐츠 제작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가 감소하고, 이는 곧 뉴스콘텐츠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정보의 왜곡 또는 불균형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론의 장이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공론에 필요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공급하여야 하여야 한다.<sup>71)</sup>

구글은 언론사의 뉴스를 활용해 제목과 기사 일부를 노출시켜 직접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는 자신들의 뉴스저작물 이용방식은 ‘공정이용’에 해당되며, 저작권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구글의 검색서비스 시장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은 뉴스저작권자가 이러한 구글의 정책에 대하여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저작권사용료 협상에 임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구글의 이러한 뉴스저작물 정책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발전에 이바지

71) 심상민, “디지털뉴스유통과 저작권”, 한국언론재단 보고서 2006-02, 157면.

하고자 고안된 저작권제도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구글의 뉴스저작물 이용방식인 직접 링크가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직접링크는 저작권법상 복사 또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기사제목과 2~3줄의 핵심내용 인용에 대하여 별도로 복제여부 등을 판단하기 보다는 ‘링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바 현재 국내 관례에 의할 경우 구글의 뉴스저작물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해석된 여지가 크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해당성에 있어서도 무단이용으로 인하여 언론사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또한 구글의 직접링크 방식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웹페이지에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링크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중의 구성원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바로 그 저작물을 송신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전송'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대법원의 ‘링크’에 대한 판단은 재고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직접링크를 공중송신권이라는 배타적 개념에 포함시킬 경우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링크대상 저작물의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자유로운 유통을 원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공중송신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구글의 뉴스저작물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구글뉴스의 헤드라인과 2~3줄의 리딩기사는 그 기사내용 중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며 창작에 가장 큰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의 무단이용은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공정이용의 또 다른 판단기준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역시 충족되기 곤란하다. 구글에게 있어서 뉴스 서비스는 뉴스 그 자체가 아니라 일단 검색의 주 대상이며, 광고와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뉴스저작물의 주된 수

익구조인 광고시장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장에서 구글의 트레픽 유발력으로 인한 시장지배력은 이미 잠재적 시장가치의 판단에 있어서 출발선 자체를 불공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제도의 근본이념은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재산권 보장’을 통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여가 핵심이다. 따라서 경제적 대가 없는 활용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뉴스저작물의 권리자에게는 그러한 저작물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로서 독점배타적 재산권이 인정되며, 그 이용에 대하여는 권리주체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마땅히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에 기반 한 보상체계를 인정하는 것과 별도로, 뉴스가 가지는 공익적 가치와 민주주의 영향성에 의할 경우 뉴스저작물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배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저작물에 대하여 마땅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당연한 저작권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져서는 안 된다. 뉴스저작물에 대하여는 뉴스창작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보상체계와 국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한 방안으로 본 고에서는 저작재산권 제한의 일 유형으로서 뉴스저작물의 이용을 보장하되, 권리자의 보상청구권을 보장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뉴스저작물의 강한 사회기속성, 공개성·활용성 등에 친한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널리 이용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모색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뉴스저작물이 언제나 무료로 이용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의 일 규정으로 뉴스저작물의 이용을 규정하여 권리자의 허락 없이 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보상은 사적이용에 준하지 않고 영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 단행본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9전정판), 박영사, 2007

나낙균·이호홍·최숙, 『뉴스저작권에 대한 인식조사 및 뉴스저작권 마케팅 방안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문재완, 『언론법』, 늘봄, 2008

문철수·지성우·문효진, 『뉴스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인식 개선방안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주제 연구 보고서, 2010-06

법제처, 『헌법주석서II』, 제2판, 2010

정인숙·성재호·지성우, 『해외 뉴스저작권 관련 제도 및 판례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 2012-01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9

#### ○ 논문

권희춘·최민식·김석훈·이성환,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유료시장 예측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주제 연구보고서, 2011-01

김규희, “직접 링크도 저작물 재산권 침해 가능 : 뉴스 저작권의 개념과 보호 범위”, 『신문과 방송』 통권480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김문현, “재산권의 보장과 한계-헌법재판소판례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헌법논총』 제19집, 헌법재판소, 2008

김민호 외, “인터넷 포털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토지공법연구』 제41집, 2008년 8월

김중보, “지적재산권 강화경향과 정보공유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헌법이념상 저작권개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46권 제1호, 부산대학교, 2005

김주영, “정보시장에 대한 헌법규정에 관한 소고”, 『Law & Technology』

제3권 6호, 2007

김현철, “링크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책임에 관한 소고”, 『계간 저작권』, 2002 여름호

박성호, “지적재산권에 관한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와 내용”, 『경제연구』 제24집 제1호, 2007

박진우, “프랑스의 뉴스와 정보에 대한 저작권,”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18호, 2005년 하권

박창신, “국내 언론의 콘텐츠 유료화 현실과 과제”. 『관훈저널』 여름호, 2010

배성호, “링크의 저작권침해 여부”, 『사법행정』 43권 10호, 2002.10

서천석, “온라인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와 대응방안,” 『지적재산권』 창간호, 2004년 4월

성선제, “온라인 뉴스와 저작권 - 상생의 길,” 『계간 저작권』 제74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년 여름호

유현우, “EU의 새로운 저작권법, 구글에 대해 ‘스니펫세(snippet tax)’ 도입 검토”, 『2016 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16

윤중수, “저작물의 공유와 과제 Ver.0.9”, 『계간저작권』, 2006 여름호

이대희, “인터넷상에서의 저작물 제공과 전송 - 서버 접속 및 인라인 링크를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2014 여름호

이인호,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한계 - 헌법상의 언론자유조항과 지적재산권조항의 긴장과 조화”, 『CLIS Monthly』, KISDI, 2003.10

이호홍·정천기·나낙균·김 숙, “뉴스저작물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이준일,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적 이해”, 『공법학연구』 제7권 제2호, 2006

장현진, “온라인 뉴스에 대한 링크설정행위의 법적 문제점”, 『Law & Technology』 3권 1호

정필운, “헌법 제22조 제2항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20권 1호,

2010

조영신, "2015 해외 미디어 동향 -05 페이스북, 구글, 애플의 뉴스 서비스 전략 - '인스턴트 아티클'에서 '애플 뉴스'까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5

정하중,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있어서의 재산권 보장”, 『헌법논총』 제9집, 헌법재판소 1998.12.31

지성우·최민재, “디지털 뉴스 저작권 신탁관리,” 『디지털 뉴스 유통과 저작권』, 한국언론재단, 2006

지성우·김영욱, “뉴스저작물의 저작권”, 한국언론재단, 2005

지성우, “디지털시대 뉴스 콘텐츠 저작권보호 입법방안 연구”, 한국신문협회, 2010

지성우, “언론기관의 뉴스콘텐츠 보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최병규, “지적재산권과 헌법의 관계”, 『지적재산권 연구논단』,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5.02

표명환, “헌법상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헌법재판소의 보장 내용 법리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46집, 2012

한국신문협회, “뉴스콘텐츠 저작권 보호방안”, 2008.

한수웅,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운 형성하는 법규정의 헌법적 문제”, 『저스티스』 제32권 제2호, 1999

<국외문헌>

Alan Baker, "EU Copyright Directive: can a hyperlink be a 'communication to the public'?",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s Law Review, 2014, 20(4)

Andrew L. Deutsch, “‘Ownership’ of the news: copyright, trademark, ‘hot news’ and database protection issues,” Practising Law Institute / Patent, Copyright, Trademarks, and Literary Course Handbook Series, vol.522, June-July, 1998

Computer & Communication Industry Association. Economic Contribution

- of Industries Relying on Fair Use . Washington D.C : CCIA, 2006
- Eric B. Easton, “Who owns ‘the first rough draft of history?’: reconsidering copyright in news,”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 vol.27, Summer, 2004
- Harold Bloom, *The Anxiety of Influence : A Theory of Poetry*, Oxford Univ. Press, 1973
- Jeremy de Beer, Mira Burri, "Transatlantic copyright comparisons: making available via hyperlinks in the European Union and Canada",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2014, 36(2)
- Jessica Litman, *The Public Domain*, Emory L. J. 39, 1990
- Julie E. Cohen, “Copyright and the Perfect Curve,” *Vanderbilt L. Rev.* vol. 53, 2000
- Matthew D. Bunker, “Transforming the news: copyright and fair use in news-related contexts,” *Journal of the Copyright Society of the U.S.A.*, vol.52, Spring, 2005
- Michael A. Heller. “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 : Property in the Transition from Marx to Markets" 111 *Harv. L. Rev.* 621, 1998
- Neil Netanel, *Copyright Alienability Restrictions and the Enhancement of Author Autonomy ; A Normative Evaluation*, *Rutgers L. J.* 24, 1993
- William M. Landes & Richard A. Posner, *The Economic Struc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 Press, 2003
- William W. Fisher III, “Reconstructing the Fair Use Doctrine,” *Harvard L. Rev.* vol. 101, 1988

<Abstract>

## Study on Google's copyright policy relating to the News work

Kim, Hyunkyung\*

Creation of high quality news contents is the cornerstone of press freedom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of citizens. However, in order to produce excellent news content inevitably a lot of time and money are needed. If the value of news contents will be neglected and this effort given to the news content creation will not be respected, the investment in news content production will be reduced. The decrease in this investment leads to deterioration of the news content quality and undermines the freedom of the press as bringing distortion or imbalance of information, ultimately, it will result in a retreat of democracy.

Google, representative firm that provides online news contents, provides news contents with deep-linked manner by exposing the news headlines and 2-3 lines taking advantage of news contents created by the news media. However they insist that the use of news work in this way is a 'fair use' and are sticking to policies that do not need to royalties. Google has a powerful influence on the search services market, therefore, it is difficult for a news copyright holder to have comparable position and fairly to wrestle for royalty negotiations with respect to such a Google's copyright policy. So it was reviewed in this paper if this policy of Google news works meets the copyright system designed to contribute to cultural development by protecting the rights of authors and promoting fair use.

---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Linking news work is seen as the 'public transmission'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so the Supreme Court judgments on the "links" should be reconsidered. However, if such deep link be include in the Right of Public Transmission as exclusive right, it is not preferable in terms of promoting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Meanwhile when viewed as a logical concept, it is not reasonable to completely deny whether rights violations by that no 'link' does not correspond to the public transmission behavioris. In this case, it is appropriate to take an approach that limits the public transmission right as a specific case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hat the uses of news works by Google are 'fair use of copyrighted work'. It does not meet the criterion of fair use, 'Proportions of used parts in the entire works, etc. and their importance' and 'Influence of the use of works, etc. over the current market or value or potential market or value of such works'. Therefore, in light of the intent of the copyright system to protect property rights in creating incentives for, and that the news has public value and democracy Impact, remuneration system as creation incentives and system that anyone can be utilized without discrimination should be sought for news copyrighted work. Therefore, by defining as a new type of the limits of the author's property rights, it guarantees to take advantage of the news work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owner, compensation is recognized only when used by operating without a private u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use of news contents as a new type of restriction of author's property rights so that the news can be used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right holder, but only when the compensation is not used for private use but for business use, It should be harmonized with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Key Words : Google, News copyright, Fair use, Deep link, Limitation  
on Author's Property Right

